
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안 작성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(안 제4조제2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